

# 수출보험제도 운영현황

한국수출보험공사

## 목 차

- I. 머리말
- II. 수출보험의 개요 및 기능
- III. 수출보험제도 운영 현황
  - 1. 제도일반
    - 가. 수출보험기금
    - 나. 담보위험
    - 다. 운영방식
    - 라. 보험요율
  - 2. 수출보험 운영종목
  - 3. 일반적인 보험이용절차
    - 가. 신용조사
    - 나. 보험부보
    - 다. 사고보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1986년 이래 3년 연속 고도성장을 시현했던 우리경제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출부진과 수입급증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990년의 48억 달러에서 1991년에는 97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1992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EC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의 심화, UR협상의 진전, 세계경제의 블록화 등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경제 환경의 악화와 함께 임금상승·투자위축 등 국내경제환경의 악화가 겹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경제환경의 안정화와 함께 기술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수출금융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 및 통상마찰의 회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출보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간접수출지원제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 II. 수출보험의 개요와 기능

수출거래는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무역업자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로서 특정물품을 외국에 있는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이다. 따라서 국내 상거래에 비하여 상품의 이동거리가 멀고 또 매매당사자

는 언어, 법률, 화폐제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험도 국내거래에 비하여 훨씬 크고 복잡 다양하다.

이러한 위험을 대별하여 보면 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수출상품을 운송(Delivery)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결제(Payment)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상품의 운송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선박의 침몰·화재 등에 의한 수출상품의 멸실·훼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해상보험에서 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일방적 계약 파기 등에 따른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의 회수불능과 수출계약상대방의 재정상태악화로 인해 초래되는 대금지급 지연위험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전쟁, 내란, 수입제한, 환거래제한조치 등의 계약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수입국의 정치·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른 수출불능 및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서 담보되지 않으므로 수출자가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결제측면에서의 일정한 보호장치가 없이는 수출자나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는 과감한 수출활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으며, 동시에 수출자나 수출상품생산자에게 수출자금 또는 생산·집하·가공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도 대출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으므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로서의 비영리 정책보험이 바로 수출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실시 이후, 정부가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정책을 강화함과 아울러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중요시 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주요 수출경쟁국과 같이 무신용장 수출거래와 중·장기연불 수출거래까지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또한 정치, 경제적·사회적으로 다소 안정되지 못한 국가에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 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69년 2월 18일부터 대한재보험공사는 정부대행기관으로서 수출보험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한국수출입은행이 1977년 1월 1일부터 수출보험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2년 7월 7일자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으며 동공사에서 수출보험업무를 전담 취급하게 되었다.

한편, 수출보험은 선진국과 개도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그 기능은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여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2.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에 의해 수출대금 회수가 보장되므

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조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적전·후 금융을 공여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수입자의 대금지급체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준다.

###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 수지균등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최대한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 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한다.

## III. 수출보험제도 운영 현황

### 1. 제도인반

#### 가. 수출보험기금

수출보험기금은 수출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에 의하여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원으로서 수출보험의 담보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금은 1978년까지 정부의 출연금과 기금회계의 결산상 발생한 이익금의 전입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1978년까지 정부의 출연금과 기금회계의 결산상 발생한 이익금의 전입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1979년부터는 기금의 결산상 발생 이익금을 기금에 전입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시에 기금의 소진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기금의 결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립금에 의해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무한한 담보력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수출보험업무 개시년도인 1969년 중에 3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기금을 증액하여 1992년말 기준으로 9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표1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1말 현재	'92 계획	'92말 누계
정부출연금	486	364	850
민간출연금	50	-	50
계	536	364	900

#### 나.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위험으로서, 수출보험에서는 수출보험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 (1) 비상위험(Political Risk)

비상위험이란 협의로는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나, 수출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상위험은 광의의 개념이다. 즉 수출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으로 약관상 명기하고 있는 비상위험에는 통상 ①수출허가의 취소 등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위험 ②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쟁, 혁명, 내란 등 정치적인 위험 ③외환 부족으로 인한 수입국의 환거래제한, 지급유예, 수입국정책으로 인한 수입규제조치 등 경제적 위험 ④해외투자에서의 수용위험 등이 있다.

## (2)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한 위험 즉, 수입자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으로 ①지급수단의 계속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채무를 순조롭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 ②수입자가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지급거절 ③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한 후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지급지체 등을 말한다.

### 다. 운영방식

수출보험은 보험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개별보험 인수방식과 포괄보험 인수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 (1) 개별보험

보험계약자가 개개의 거래건에 대하여 청약하는 보험방식으로 보험계약의 양당사자는 보험부보와 보험인수에 있어 각기 선택할 수 있어서 수출자로서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거래만을 선택해서 부보할 수 있는 한편, 보험자로서도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2) 포괄보험

사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포괄보험특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의 수출거래를 의무적으로 부보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의 역선택을 배제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수출자의 경우에도 미리 체결된 특약에 따라 거절할 우려가 없게 되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견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보절차의 간편화로 인한 부대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게 된다. 현행 보험종목중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은 개별보험 방식과 더불어 포괄보험 방식도 병행·운영하고 있다.

### 라.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보험료를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상업보험에서는 과거의 부보실적과 수입보험료, 손해율 등에 관한 통계 등 보험사업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확률 계산방식에 의거 적정 보험요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수출보험에서는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보험사고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때문에 적정보험을 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원래 수출보험의 보험요율은 수출보험기금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수출보험요율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진흥에 역점을 둔 까닭에 이보다 훨씬 저율로 책정되어 있다.

보험요율은 신용기간, 국별신용도, 결제조건 등을 감안한 기본요율, 지급보증기관의 신용도, 공공수입자 여부, 본지사간거래 여부 등을 감안한 특별할인을, 포괄보험 부보방식에 따른 할인률, 중소기업할인을 및 할증을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책정하게 된다.

## 2. 수출보험 운영종목

수출보험은 일반 소비재 상품의 단기수출뿐만 아니라 산업설비·기계류 등의 중장기 연불수출, 해외건설 수출 및 해외투자에 이르

기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한 모든 대외거래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여 9개의 보험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각 보험종목별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출어음보험**

수출자가 발생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수입자의 대금미지급으로 어음의 만기에 부도가 되어 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용이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금미회수의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이 외국환은행 앞으로 지급되므로 그 금액만큼은 수출자에게 청구하지 않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산업설비·선박·기계류 등 자본재를 6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중·장기로 연불수출을 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상대국정부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 외환사정악화에 따른 투자원금 등의 본국으로 송금불능, 전쟁·내란·혁명 등에 의한 사업계속 불능에 따라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 수출보증보험**

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해외건설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이 해외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마. 일반수출보험**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후 선적전에 계약이 파기되거나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 수입자 파산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바. 수출금융보험**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선적전 금융지원을

표2 수출보험 운영종목

대 상 거 래	보 험 종 목	주 요 내 용	보 험 계 약 자	최 대 보 상 륜	
상 품 수 출	단 기 거 래	신용장 및 무신용장방식 단기수출 거래의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외 국 환 은 행	90%	
	(일반상품)	일반수출보험	수출불능 및 수입자파산에 의한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수 출 자	90%
		수출금융보험	선적전 용자금 회수불능위험 담보	외 국 환 은 행	90%
		위탁판매수출보험	위탁판매에 따른 손실 담보	수 출 자	90%
	중장기거래 (자본재)	중장기연불수출보험	공급자신용거래에 의한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수 출 자	90%
수출대금금융보험		전대차관, 직접대출 등 구매자 신용 거래에 의한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외 국 환 은 행	70%	
해 외 건 설 공 사	수출보증보험	은행의 보증서발급에 따른 위험담보	외 국 환 은 행	70%	
	해외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대금 미회수 위험담보	해 외 건 설 업 체	80%	
해 외 투 자	해외투자보험	투자원금 및 과실금 회수불능 위험담보	투 자 자	90%	

한 후 수출불능 등에 따라 용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 수출대금금융보험

금융기관이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한 후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아. 위탁판매수출보험

위탁판매의 형식으로 화물을 수출하게 되었을 경우 수출자가 당초에 예상한 만큼 판매가 되지 않아 그 화물의 수출과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 해외건설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행한 후 해외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보험종목 중 일반수출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 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등 5개 보험종목은 수출자 또는 해당기업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종목이며,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여 수출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종목이다. 또한, 일반수출보험과 수출금융보험은 통상 선적전 위험을, 수출보증보험은 선적전후 위험을 기타 보험은 선적후 위험을 담보한다.

3. 일반적인 수출보험 가입절차

가. 신용조사

수출보험가입(부보)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부보험가 수출자는 당해 수입자 및 수출자본인이 수출보험부보 적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사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보험은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비상위험도 담보하고 있으므로 수입국의 정치·경제정세 분석에 따른 국별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험부보

(1)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건별보험관계성립 종목

수출어음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보증보험은 회계년도 또는 반기별로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청약서를 접수하여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보험계약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어음매입, 어음대출 또는 수출보증행위(이하 “어음매입 등”이라 함)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통지하면 보험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면 어음매입 등을 한 날의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어음보험의 경우에는 화환어음매입 이전에 인수한도책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청약의 승낙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종목

일반수출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건설공사보험의 경우는 수출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내 수출자(해외건설업체, 해외투자자) 또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청약을 승낙하고 당해 승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보험료납부 지정일 이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한 경우 보험증권을 교부하

고 잔액의 보험료는 납부원인행위(선적, 공사개시, 자금공여 등)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일반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을 제외한 종목은 통상 수출금액이 거액이고 결제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대금미회수위험이 높으며 계약조건이 복잡하여 위험측정에 어려움이 따름을 감안, 본청약 이전에 예비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서를 교부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그러나, 예비신청에 대한 검토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인수심사는 본청약시점에서 행하여진다.

#### 다. 사고보상

만기일에 수출대금 등이 회수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하여야 하며 수출보험공사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및 수출보험계약관련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KOTRA, 해외전문조사기관 등을 통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손실인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약관에서 규정한 보험금지급시한내에 지급하게 된다.

### IV. 맺음말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를 대별해 보면 조세지원, 수출금융지원, 수출보험, 기타 정보 등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제도는 중첩되면서도 각기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중 수출보험제도의 기능으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보험담보를 통한 신시장개척

지원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수요기반의 확충을 독자적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서도 수출보험의 고유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위험도가 비교적 큰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충분한 수출보험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출자들은 신시장개척보다는 이미 확보된 기존시장에의 진출확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그 결과 기존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그만큼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출보험기능의 확대, 강화는 일차적으로 신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해소에도 기여함으로써 기존시장에서 안정적 수출증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조사지원제도, 수출금융지원제도가 통상마찰 해소와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통화관리문제로 인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수출보험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출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 전담기관으로 발족하게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유기금의 확대 및 이를 통한 위험거래의 적극적 인수, 무역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령체제의 강력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보험종목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수입자에 대한 신용자료 등 신용정보의 제공, 수입국에 대한 신용도 평가 등을 통한 비상위험 발생가능성의 사전예측 등 수출보험부수기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